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2149
-----------	------

2021년 3월 3일
교 육 위 원 회

I .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2월 4일, 성흠제 의원
2.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1년 3월 3일 상정, 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흠제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학생들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보건교육에 마약류의 오용·남용의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상위법령인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의 오용·남용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2019.12.10.에 공포하여 2020.6.11.부터 시행하고 있어 「학교 보건법」에서 수정된 ‘보건교육’ 정의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건교육의 정의에 마약류의 오용·남용의 예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호).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4일 성흠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149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 보건교육 중 약물 오·남용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에 마약류까지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마약의 유해성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마약 및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2019년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에서는 다른 연령대의 마약사범 수 증가율보다 높게 5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¹⁾

1) 출처 : 경찰청

[표-1]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14년	5,699	75	841	1,544	1,883	840	446	70
'15년	7,302	94	969	1,793	2,272	1,230	853	91
'16년	8,853	81	1,327	2,196	2,631	1,433	1,080	105
'17년	8,887	69	1,478	2,235	2,340	1,466	1,189	110
'18년	8,107	104	1,392	1,804	2,085	1,393	1,196	133
'19년	10,411	164	2,422	2,499	2,207	1,572	1,295	252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표-2]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현황(20.11월 기준)

(단위 : 교, 시간)

급별	학교 수	실시 학교 수	미실시 학교 수	학급별 교육시간
초	602	598	4	2.7
중	386	379	7	1.9
고	320	307	13	1.8
특수	32	32	0	2.2
합계	1,340	1,316	24	2.2

- 특히 2019년 12월 10일 「학교보건법」 제9조(시행 2020. 6. 11.)가 “약물 오용·남용(濫用)의 예방”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으로 개정되었는바, 동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적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2275, 2021.2.17.).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약물”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생 략)</p> <p>1. (생 략)</p> <p>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u>약물 오·남용</u>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과 건강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만</u> <u>약류를 포함한 약물</u> ----- ----- ----- ----- -----.</p>